

안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

제정 2017. 3. 6 조례 제2805호
일부개정 2020. 3. 2 조례 제3177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20. 7. 10 조례 제3213호(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 기본법」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 및 기능)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안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0. 3. 2>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안양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, 시행 및 분석·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
2.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 관련 위원회와의 업무 협조
3.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
4. 그 밖에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, 행사진행 등

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4조(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나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, 추천을 병행하여 지역별, 성별,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특정 성(性)이 위원수의 100분의 60을

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2>

제6조(위원의 위촉해제)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.

1.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
2.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
3.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
4.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“특별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천재지변
2.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
3. 본인 질병과 사고
4.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(2촌 이내)의 상(喪) 또는 결혼
5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의견 수렴)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,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·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7. 10>

제11조(위탁)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규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20. 3. 2 조례 제317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7. 10 조례 제3213호,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⑦ 까지 생략

⑧ 안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”를 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⑨ 부터 ⑧ 까지 생략

